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 개정 보고

제출연월일 : 2008. 9. 1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경제통상국장에서 경제과학국장으로, 문화체육국장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 컨벤션뷰로의 정관 제10조 (임원의 선출방법)중 당연직 이사의 명칭을 변경

2. 주요내용

정관 제10조 3항의 당연직 이사중 “시 경제통상국장”을 “시 경제과학국장”으로, “시 문화체육국장”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변경

3. 참고자료

가.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 제2항 컨벤션뷰로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한 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제47조(정관의 변경) 컨벤션뷰로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제 호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안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의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 “시 경제통상국장”을 “시 경제과학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제3호 “시 문화체육국장”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원의 선출방법) ①<생략>	**제10조(임원의 선출방법)**①(현행과같음)
②(생략)	②(현행과같음)
③(생략)	③(현행과같음)
1.(생략)	1.(현행과같음)
2. 시 경제통상국장	2. 시 경제과학국장
3. 시 문화체육국장	3. 시 문화체육관광국장
4.(생략)	4.(현행과같음)
④~⑤(생략)	④~⑤(현행과같음)
	부 칙
	이 정관은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대전컨벤션뷰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 ①(생략)

②컨벤션뷰로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한 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제47조(정관의 변경) 컨벤션뷰로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